

외과에 근무하던 86년 12월 13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대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 당시 장씨가 말고 있던 검찰의 판사가 4명이나 개월을 끌어냈다. 수사와 재판이 겪은 고통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었다.

를 무고죄로 기소하고 신씨와 장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장씨가 말고 있던 검찰의 판사가 4명이나 개월을 끌어냈다. 수사와 재판이 겪은 고통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었다.

를 무고죄로 기소하고 신씨와 장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장씨가 말고 있던 검찰의 판사가 4명이나 개월을 끌어냈다. 수사와 재판이 겪은 고통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었다.

를 무고죄로 기소하고 신씨와 장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장씨가 말고 있던 검찰의 판사가 4명이나 개월을 끌어냈다. 수사와 재판이 겪은 고통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었다.

를 무고죄로 기소하고 신씨와 장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장씨가 말고 있던 검찰의 판사가 4명이나 개월을 끌어냈다. 수사와 재판이 겪은 고통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었다.

를 무고죄로 기소하고 신씨와 장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장씨가 말고 있던 검찰의 판사가 4명이나 개월을 끌어냈다. 수사와 재판이 겪은 고통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었다.

를 무고죄로 기소하고 신씨와 장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장씨가 말고 있던 검찰의 판사가 4명이나 개월을 끌어냈다. 수사와 재판이 겪은 고통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었다.

를 무고죄로 기소하고 신씨와 장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장씨가 말고 있던 검찰의 판사가 4명이나 개월을 끌어냈다. 수사와 재판이 겪은 고통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이 지연되었다.

신교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학교당국은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라!

진실은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물려서지 맙시다!

서울대 대책위신문

성희롱 사건 특별호

펴낸이: 서울대학교 화학과 조교 성희롱 대책위
펴낸곳: 서울대학교 화학과 조교 성희롱 대책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6-1

1993년 11월 25일(목요일)

총학생회와 대학원 자치회협의회가 모든 서울대인에게 드리는 신문입니다.

법정으로 치달은 성희롱 공방

신교수 치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엇갈린 증언

대자보 게재 전후부터 치밀하게 고소준비

신교수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피소된 우희정씨가 지난 18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신정효교수가 제출한 자료들은 그 준비가 너무나 치밀하여 신교수가 일찍부터 고소를 준비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단순한 대자보모습의 촬영이

아니라 글자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크기로 촬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글자 내용까지 판독가능한 사진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이야기이다. 대자보가 불자마자 이를 충족시키는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은 이미 신교수가 사전에 이 사건을 예상하였거나 사건 시작부터 명예훼손시비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확인해준다.

보도 일지

- 93. 8.26 조 선 일 보: "교수가 '조교 성희롱' 서울대 대자보 올렸음"
- 93. 9. 5 일 오 신 문: "책임질달라 놓고 대자보공방"
- 93. 9.13 대 학 신 문: "화학과 조교 사건 관련 두 가지 의혹점"
- 93. 9.26 한 국 일 보: "서울대 교수 성추행 공방 재연"
- 93.10월 월 간 일 지: "서울대 교수 여조교 성희롱, 그 공방의 진상"
- 93. 9.28 서울대학신문: "신교수에 대한 증언 끌어" "우희정 기권 수개월 만에 재발언"
- 93.10. 6 문 화 일 보: "교수 성희롱시비 법정비화"
- 93.10.20 경 향 신 문: "교수 성희롱 공방가일"
- 93.10.20 스포츠서울: "서울대 조교 성희롱 파문 확산"
- 93.10.20 인권하루소식: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 필요"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기자회견(요약)"
- 93.10.21 한겨레신문: "서울대 조교 성희롱 관련 여성계 공동대책위 구성"
- 93.10.21 중 앙 신 문: "서울대사건 대책위 - 성희롱 피해 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신교수측과 대학본부측의 의식적인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노력은 학내외에서 수그러들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사건은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기사들)

신교수, 모순된 증언으로 공공형량의혹 증폭시켜

우희정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차 심리가 지난 11월 11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선 신정효교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

신교수는 "나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 이유는 조교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이다"고 답하여 임기가 92년 6월 시작에 시작된 것을 부지중에 인정하고 말았다. 이로써 우씨의 임기시작과 종료가 6월인지 8월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신교수와

"도입에 있을 때 '한국에서' 성희롱한 적 없다"

우희정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신정효교수는 자신의 성희롱 사실을 전면부인하면서 그 증거로 제시한 진술서가 전혀 일관한

지난 8월 24일 우씨가 서울대 도서관에 대자보를 붙임으로써 여론화된 성추행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한 이 문제는 신정효교수와 우희정교수 두 당사자간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그 파장을 학외로 확산시키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을 학내에서 풀어보고자 총학생회, 대학원 자치회, 여성문제 연구 동아리협의회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대자보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교수측의 사건은 왜곡 소기도 있었음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진상조사단은 대학당국의 책임있는 사태해결을 요구하는 범교직원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단 3일 사이에 4천부의 서명서가 수거되어 학우들의 관심과 높은 해결 의지도 확인되었다. 이에 진상조사단에서는 사태해결을 위해 대책위 대표, 대학본부, 우조교, 신교수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는 건의서를 학교측에, 공개해명요구서를 신교수측에 각각 전달하였다. 그러나 신교수와 학교측은 4자회담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공개해명요구서에 대한 신교수의 답변서는 질문에 대한 이렇다할 근거가 없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특히 신교수의 답변서에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학내에서 풀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작년에 열린마당에서 본 서울대 총원회의의 김진관-김보은 사건에 관한 언급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자랑스러운 기억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 원인은 교수의 의사에 감히 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교수와 조교간의 불균형적 도제관계와 구체적 원칙이 존재하지 않은 채 교수의 권력이 사실상 인정되는 조교입용방식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목소리

마지막으로 이성애 호소한다

사람들은 3만 서울대인이다.

이제 성추행 사건은 이 학교의 주인이자 이 사태해결의 주체인 서울대인의 손을 떠난 법정공방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치달고 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이 일은 단순히 신교수와 우조교 단 두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될 3만 서울대인의 문제이다. 신교수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것은 죽어버린 법문구앞에서가 아니라 3만 서울대가족 앞에서 해야 할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며 이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3만 서울대인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내지 못하는 금지산자로 돌아서우면서까지 서둘러 법정으로 향한 신교수의 의도는 무엇인가? 성추행을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상의 허점을 노려 법률적인 이익을 보려는 술수가 아니라면, 그리고 신교수가 아직도 자신이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하고 떳떳하게 서울대인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수개월간 학내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확인과 사태의 원만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법정싸움으로 확산되도록 방관한 대학본부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학교측은 이러한 처신이 앞으로 일어나게될 성추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하소하겠다는 의사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피해를 더이상 원치 않으며 계속 신교수와 학교측이 문제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대학본부와 신교수는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3만 서울대인의 절실한 요구임을 하루빨리 깨닫고 더이상 손으로 해를 가리는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고 서울대

이미 미국과 일본 및 성폭행과는 별개의 회계에 의한 고발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 상정하려는 시도가 있

지만 우리나라에서 법제들이 중심이 되 법 제정을 국회에 상정하여 관심을 모으

위엔 사회로 나간 사람이 강간을, 4명 성폭행을 그리고 8 언어적 희롱을 당해서 우리 자신이 딸이 제2, 제3의 피해자가 될까? 그동안 알게 있던 모든 여성들 피해될 수 있는 결

93. 9. 28 서울대학신문: "신교수에 대한 증언 글이여" "우씨 입기전 수개월 금어 행방요연"
93. 10. 6 문 화 일 보: "교수 성희롱시비 법정비파"
93. 10. 20 경 향 신 문: "교수 성희롱 공방가열"
93. 10. 20 스포츠서울: "서울대 조교 성희롱 파문 확산"
93. 10. 20 인권하루소식: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할사처벌 필요"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기자회견(요약)"
93. 10. 21 한겨레신문: "서울대 조교 성희롱 관련 여성계 공동대책위 구성"
93. 10. 21 중 앙 신 문: "서울대사건 대책위 - 성희롱 피해 신고받았어"
93. 10. 26 동 아 일 보: "직장성희롱, 법도 속수무책"
93. 10. 29 서울대학신문: "성희롱사건 사회문제화"
"신교수, 대자보내용 일부시인"
93. 11월 월 간 조 선: "사법문제로 비화된 교수와 조교사이의 성희롱 시비 - 진실은 무엇이며, 기준은 어디인가?"
93. 11월 월 간 일 지: "한국에 상륙한 '성희롱' (박원순 변호사 부고문)"
93. 11월 무 민 선 소: "서울대 교수와 여조교, 성희롱추문 쌍방에게 사건진상을 묻는다"
93. 11. 1 한 국 일 보: "친교회 폐지 거센 목소리"
93. 11. 8 월 요 신 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피해자 속출...영도는 살아있다"
93. 11. 8 한국대학신문: "대학가 '성문제' 최대관심사로 부상"

신교수측과 대학본부측의 의식적인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과 정의를 세우기위한 노력은 학내외에서 수그러들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기사를)

신교수, 모순된 증언으로 공금횡령의혹 증폭시켜

우희정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입판청구 소송 2차 심의가 지난 11월 11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선 신정효교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여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희정씨가 보수 지급을 청구한 임기초인 92년 6.7월 두달간의 기간에 대해 학교측에서는 "교육기간"이므로 정식임기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증인으로 나선 신정효교수 또한 우씨의 임기는 92년 8월에서 93년 8월까지이며 그 전 2개월간은 '교육기간'이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잠시후 판사가 93년 6월 말경 - 이 시점이 우씨가 신교수에게 사임을 종용받은 때이다 - 우씨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신교수는 "나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 이유는 조교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이다"고 답하여 임기가 92년 6월 시작에 시작된 것을 부지중에 인정하고 말았다. 이로써 우씨의 임기시작과 종료가 6월인지 8월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신교수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화학과 과장 교수의 증언과도 증언이 엇갈리자 신교수는 재판 말미에 보충설명을 신청하는 등 당황스런 모습을 보였다.

문제기간의 보수가 신교수에 의해 횡령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현 시점에서 신교수의 모순된 증언은 큰 의혹을 낳고 있다. 동시에 유급조교의 임기에 무보수 '교육기간'이 있다는 황당한 내용의 답변서까지 제출한 사실로 보아 학교 본부측까지 사건의 은폐에만 급급할 뿐임이 드러났다.

"독일에 있을 때 '한국에서' 성희롱한 적 없다"

우희정씨의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신정효교수는 자신의 성희롱 사실을 전면부인하면서 그 증거로 제시한 진술서가 전혀 엉뚱한 사람의 것이어서 많은 이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우희정씨의 전임여성조교 3명(원위상 A, B, C로 표기)중 우씨의 진정서와 대자보에 성희롱 피해사실을 호소한 여성조교는 A씨와 B씨이다. 그런데 신교수는 "자신은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엉뚱하게도 C씨로부터 얻어 제출한 것이다.
C씨가 조교로 재직하던 임기중(90년 경) 신교수는 독일에 체류중이었고 따라서 신교수와 C씨는 서로 얼굴을 마주볼 기회가 거의

한 번씩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자랑스런 기억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 원인은 교수의 의사에 감히 반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교수와 조교간의 봉건적 도제관계와 구제적 원칙이 존재하지 않은채 교수의 전권이 사실상 인정되는 조교임용방식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채 학내에 남아있다. 결국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보게될

없었다.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여성조교들의 진술에 근거한 정황으로 볼 때 B씨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객관적 조건(접촉할 시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신교수가 제출한 진술서는 자신이 한국에 없던 기간에, '한국에서'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너무나 당연한 주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피해를 더이상 원치 않으며 계속 신교수와 학교측이 문제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대학본부와 신교수는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3만 서울대인의 절실한 요구임을 하루빨리 깨닫고 더이상 손으로 해를 가리는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고 서울대 인과의 대화의 장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신교수에게 항의 전화를 합시다

"교수님,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교수님, 그런데 왜..."
"교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아일보
장성희롱 法도 속수무책
처벌대상 여부 판별규정 전혀없어
93. 10. 26

신화일보
명예훼손소송으로 파
교수
93. 10. 6

이제 2만이
나서야...

조선일보
교수 성희롱 여
93. 9. 5

한겨레신문
서울대 조교 성희롱 관련
여성계 '공동대책위' 구성
93. 10. 21

월요신문
서울대 조
93. 11. 10

조선일보
교수가 조교 성
93. 8. 26

한겨레신문
교수 성희롱 여
93. 9. 26

중앙일보
93. 10. 21

우리는 고발한다①

피해자들이 밝힌 신교수 성희롱 시나리오

CASE1. 의도적인 신체 접촉

피해자	날 짜	장 소	피 해 내 용
전임조교A		23동 4층 교수의 연구실	조교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너무 귀엽고 예뻐서 그러는 거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함.
전임조교B	91년 12월초	남한산성	산정상에 이르러 산아래를 관망하던 조교를 등뒤에서 끌어 안았으며 이를 뿌리치며 하산하자고 하는 조교에게 함께 저녁식사할 것을 강요.
	91년 12월초	63빌딩 Pizza	'교수라는 직업은 따분하고 고독하다'며 조교에게 하소연하며 조교가 위로해주기 바란다는 말을 함.
	91년 12월		조교와 교수 단독만의 이틀간 휴가를 교수가 제의. '사모님과 함께 가시는 것이 어미냐'는 조교의 말에 '무슨 재미로 부인과 휴가를 가냐'며 불쾌한 표정을 교수드러냄. 조교는 휴가 제의를 거절.
우조교	92년 6월	23동108호 NMR실	기기연수과정중 조교의 팔꿈치 뒷부분을 잡고 얘기하거나 조교의 등을 위 아래로 쓰다듬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
	92년 8월	NMR 기기실	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척하며 Computer앞에 앉은 조교의 등 뒤에서 교수가 Keyboard조작을 연출하며 조교를 등뒤에서 포옹하는 자세를 취함.
	92년 9월	22동309호 조교실	책을 보고 있던 조교의 땀아 늘어진 뒷머리를 쓰다듬고 머리칼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어이없는 행동을 함.

CASE2. 단독만의 입방식 제의

피해자	일 시	장 소	피 해 내 용
전임조교A			입방식에 나가 보니 단독만의 입방식이 있고 입방식중 '연인으로 지내자는' 등의 언행으로 당혹스럽게 만들고 억지로 팔짱을 끼도록 함.
전임조교B			단독만의 입방식 제의
우조교	92년 6월	23동4층 교수연구실	'남씨가 좀 서늘해지면 실험실 사람들 모르게 교수자신과 단독이서 만 넥타이 매고 가는 곳에서 입방식을 하자'고 제의.

CASE3. 교내목공소 동행시 산책제의

피해자	일 시	장 소	피 해 내 용
전임조교A			마지못해 동행했던 한번의 산책에서 교수는 이끌어준다면서 B양의 손을 잡고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의 기회로 삼았음.
전임조교B			우조교와 동일한 방식의 산책제의
우조교	92년 10월	23동에서 목공소로 가던 중	'관악산 허리에 조용한 산책길이 있으니 청바지와 운동화를 가져다 두고, 옷을 갈아 입을 곳이 없으면 교수의 연구실에서 문을 잠그고 같이입으면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매일 산책하자'고 제의. 조교는 변전에서 거부의를 분명히 함.

CASE4. 성추행 거부 이후

피해자	일 시	장 소	피 해 내 용
전임조교A			교수에 대해 경계의 빛을 보이자 B양의 근무지를 변경해 놓은 뒤 근무지를 옮기라는 통보를 함.(후임자는 이미 결정된 상태였음.)
전임조교B			오후 6시의 퇴근 시간을 지키려는 조교에게 '할일 없으면 퇴근하라'고 종용함으로써 사정을 모르는 다른 학생들이 조교 마음대로 퇴근하는듯 보이게 함.
			기기작동법에 관하여 학생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조교에게는 그곳된 작동법을 지시하여 학생들이 조교가 기기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음.
			근무대만을 이유로 출근금지 통고, 출근 중지 통고일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좋다는 내용의 해임.
			우조교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을 수행하라고 지시. 인점 유가공통기

우리는 고발한다②

8년 제자 앞길 막아

7월 3일 신정효교수는 자신의 실험실 학생들과 박박사가 있는 자리에서 '심기가 불편하여 연구의욕이 없다'는 이유로 약 2개월간 실험실을 폐쇄하겠다고 말한후 박박사를 따로 불러 '자네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실험실 퇴실을 요구했다. 박박사가 그 다음날인 4일과 5일 이틀간 집을 정리해서 실험실 신교수는 일주일만에 실험실문을 다시 열고 8년동안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던 실험실 열쇠를 교체했다. 박박사는 지난 3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당시까지 실험실

에서 외국의 화술지에 자신의 학위논문을 실기위해 보충실험을 거의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그후 박박사는 실험실 후배로부터 '우조교가 신교수에게 했던 탄원서에 누가 교정을 본 흔적이 있었는데 이를 할 사람은 박박사밖에 없다'는 말을 신교수가 여러차례 학생들에게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또한 신교수는 다른 화학과 교수들에게 자신이 박박사를 내보낸 것은 그가 자신에게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화학과 대학원생들과 교수들의 증언이다.

우리는 고발한다③

지도학생들, 전임자 협박

전임자의 확인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밤 10시경 신정효교수의 연구실소속 대학원생 2명(채종근, 조정호)은 우박씨의 전임자의 자취방에 찾아가 '진정서의 내용은 거짓이고 우씨 단독으로 쓴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했다. 전임자는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이므로 부르는 대로 쓸 수는 없다. 관여하고 싶지 않아 진정서 제출을 꺼렸을 뿐이다'고 말했다.

며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두사람이 받아갔다. 또 9월 2일 밤 9시경에는 전임자가 없는 사이 또다시 채종근씨가 다니다가면서 '법원에서 호출장이 와도 나오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하고 갔으며, 이후 날씨는 분명하지 않으나 전임자가 귀가해 보니 '교수님이 통화하기를 원하므로 전화해 달라'는 채씨 명의의 쪽지가 남겼다.

'대학신문'이 밝힌 두가지 의혹

"이 사건을 '성희롱 여부'에 국한해서 볼 때 사실상 당사자들의 진술(서)이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간 신교수측의 행동에는 두가지의 의문점이 있다. 첫째 8년간 신교수의 지도아래 연구를 해온 박박사에게 '실험실에서 나가라'고 한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도학생의 정태에 대해 교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판단해 보더라도 앞에서 신교수나 대학원생들이 열거하는 이유

만으로 박박사에게 실험실을 나가라고까지 한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어떻게 해서 실험실 대학원들이 우씨가 총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와 동일한 문건을 가지고 우씨의 전임자를 찾아갈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여쭙한 일로 피해를 당한 어떤 사람이 해당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진정서가 피해를 끼쳤을지 모르는 당사자의 측근의 손을 들어가고 게다가 진정자를 찾아가서 심리적 위축까지 가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추적 1백일... 밝혀

22동309호의반박대자보(8.24)

"불순하게도 성적문제를 결부시켜 여성문제화하여 교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제자되 도리로 좌시할 수 없어 부족하나마 학우 여러분께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성희롱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자상하고 다양한 성품을 나쁘게 과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학과교수일동의소자보(9.14)

"이 사건의 전말을 검토한 결과 여기에 연루된 교수에 대하여 공식적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사안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 "재임용여부는...화학과 내부에서 정한 기준과 대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취한 합당한 조치."

화학과박성생들의의견(9월초)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을 은폐하려는 자들이 근무 태만과 불성실을 자신들의 논거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문제의 핵심을 피해나가고 싶은 자들의 사악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열심히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한)우리들의 존경심이 변함없이 지속되기위해서는 진상규명은 물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본부측의, 1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고루한 습성을 규탄한다."

화학과 석박사 대학원생 82명이 서명한 성명서(9.15)

"저희들은 신정효 교수님께서 분명히, 이전의 여조교, 여직원, 여대학원생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내지 추행해 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 운운하시면서 우조교와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험실 열쇠를 바꾸시면서까지, 박박사를 내쫓고 전임조교에게는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심은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예비 자연과학자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시는 겁니다."

"공적인 일에 연관되어서는 못이 있으면 서로 감추려고 하겠지만, 서로 충고하고 야단치기 그것도 밋밋하고 발전적일 뿐 아니라 그것이 명예로운 일입니다. 이 문제가 터뜨려져 느꼈던 당혹감보다도, 모 교수님께서 A. meeting시간에 들어오셔서 실험실과 동료 중 하나를 선택하면 동료의 편에 서겠다고 하신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또 다른 교수님께서 그 방식은 성명서에 서명하지 말라,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점이 더 컸습니다."

전임조교A	근무지를 옮기라는 통보를 함.(후임자는 이미 결정된 상태였음.) 오후 6시의 퇴근 시간을 지키려는 조교에게 '할일 없으면 퇴근하라'고 중용함으로써 사정을 모르는 다른 학생들이 조교 마음대로 퇴근하는듯 보이게 함.
전임조교B	기기작동법에 관하여 학생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조교에게는 그릇된 작동법을 지시하여 학생들이 조교가 기기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음. 근무태만을 이유로 출근금지 봉고 출근 중지 봉고일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좋다는 내용의 해임.
우조교	우조교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을 수행하라고 지시. 인접 유기공동기 기기를 청소하고 대걸레질을 시키는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 Air compressor로부터 기기내로 수분이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조교가 발견하고 여러차례 수리를 구했으나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가 박사과정 학생이 여러번 간언한 끝에 임시치리. 그후에도 조교가 계속같은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아예 무시. ※조교에게 적후 문제를 일으키는 기기부품을 교체하였음. 처리업무를 조교업무수행능력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그 이상의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여, 그와같은 내부관계를 알지 못하는 3자들로부터 조교가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으로 연출됨. 더우기 교수 자신이 조교에게 오후 2시이후에 오후의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오후 2시까지 조교가 점심시간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연출하기까지 함. 이상과 같이 교수가 연출 해내는 근무상황속에 견뎌내며 우조교가 근무한지 1년1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화학과조교는 1년마다 자동퇴임했으므로, 5일 이후 출근하지 말것을 느닷없이 통보함.

그러나... 지도학생의 장래에 대해 교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판단해 보더라도 앞에서 신교수나 대학원생들이 열거하는 이유

가고 게다가 진정자를 찾아가서 심리적 위축까지 가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재임용여부는...화학과 내부에서 정한 기준과 대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취한 합당한 조치."

1992년

5.29. 우조교, 실재업무 시작.
8.10. 우조교, 조교로 발령.



1993년 6월

6.25. 신교수, 갑자기 "6월30일까지 나오라" 통고.
6.28. 우조교, 재임용 거절이유를 묻자,
▷신교수, "학과내규 때문."
▷학과장, "담당교수가 자질 부족으로 싫어하기때문."
6.29. 재임용 거절이유를 거듭 묻는 우조교에게 신교수, "이유는 개인적인 것, 그럴 계속 물으면 인권유린."
7.14/15. 우조교, 신교수에 통고서 제출: "재임용 탈락이유에 대한 답변이 7월 26일까지 없을 경우 총장

7월

과 학과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것임."
▷신교수, "나는 조교 추천과 아무런 관련 없다."
▷총장의 답변서, "총장은 임명만. 실제 과정은 학과나 대학에 문의하라."
7.8. 우조교, 총장과 학과장에 소원장 제출: "재임용 탈락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7.9. 오후 2시경 신교수, NMR 기기실에 있던 우조교에게 고함치며 "기기에 손대지 마!"(당시 기기를 고치려

8월

왔던 '대양' 회사 엔지니어의 증언)
7.19~20. 우조교, 법률구조공단과 교육부에 찾아감.
7.23. 우조교, 총장에게 탄원서 제출.
7.24. 우조교, 학과장에게 질의서 보냄.
7.26. 우조교, 자신의 전임자들을 만나 신교수의 삼습적 성취를 사실 확인.
7.27. 우조교, 총장에게 진정서 제출.
8.5. 우조교, 학과장과 신교수에 건의서 제출.
8.10. 우조교, 탄원서와 진정서에 대한 대답이 없자 총장실에 전화.
▷비서실, "그럼 탄원서 모른다. 교무과로 문의하라."
▷교무과, "담당자가 없다. 총장님이 읽고 처리를 지시했다."
우조교, 다시 비서실로 전화.
▷비서실, "진정서 받은 일 없다."
▷우조교, 학교 우체국에 확인.
우체국, "본부 총무과에서 수령해 갔다."
우조교, 다시 비서실로 전화.
▷비서실, "내용중 보냈다면 다시 보냈을 것이다."
8.24. 우조교, 학내에 게재: "민족 서울대 교수, 교직원, 학생께 호소합니다!"
1시간여 지나자 담당 실험실 학생들의 반박대자보 게재 XX씨! 서울대인! 상 조종하지 마시오
8.30. 총학생회, 대학원협의회, 여성문제연

다음 내용은 서울대학교의 또 다른 가족인 조교 직원들에게 우조교 사건에 대해 서 물은 내용이 다. 상황이 이니만큼 으로 하되 다만 성별만 밝히기로 한다. -편집자-

자세한 내막도 모른채 판단할 수 없어요. 교수와 학생사이가 어떤 관계이니까요? 문제야 아닐까요? 애정관계가 없었다면 교수가 잘못이죠.(여)

(아무 말 없이 회피)(여)

어느쪽에서는 교수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들 한다. 하지만, 사람인 이상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양면성은 지니고 있어 인격에 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고 (여성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별다른 제도적 대안은 없을 것 같다.(여)



"한 교수의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범합니다" 라는
판례의 우조교 대자보가 붙고 판례는 한 동안 성폭행
그리고 교수와 조교사이의 관계와 관련해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모두 곧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일상의 대열에 묻혀버릴 수 있는지는 비난하며
분개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그때 "그게 해설일걸
못했던 말이야? 지금은 분개하고 한탄할 때가 아니라 느끼는
무관한지 않은 않은 열열에도 지금 당장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로 귀 기울이고 창피 않은 나를 숨겨줄 수는
없었다 우조교의 사건일지를 본다면 누구나 틀림없이 기존의
제도와 관행속에서 한 개인의 몸부림이 얼마나
오해해지고 무력해지고 걸 느낀 것이다. 우조교가 당했던

같은과 학과나 자기와 같은 일을 겪었던 선배조교에게
노기 배신감으로 인한 좌절도 컸으리라.
그러나 그들 역시 일 개인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가
힘을 모아 우조교를 나약하고 비굴하게 만든 2성제를
없애는 것이 제2의 우조교가 생기는 것을 막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 신문에 실린 사건경위와 설명들이 나의
주상적인 대자보가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학습 있는
영역에서 열심히 학습 있는 것을 찾아서 한다면
되고 마는 우조교의 입장에 찢기가 통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글은 인문대 여학생이 쓴 편지글입니다.

이야기 하기
어렵다(여)

바빠서 내막을
잘 모르겠어요.
(여)

지금까지 학생
들이 보여주었던
운동의 과격성
때문에 대자보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 만약 사실
이라면 자식같은
제자에게 그런
것을 했다는 건
큰 잘못이다. 교
수직 사회 문제
는 본인 내막을
알 수 없다. 이
런 이야기를 이
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설문
지라도 작성해야
지.(남)

자식같은 텐
데. 나같은
뻘뻘다.(남)

관학의수치 우리승리로써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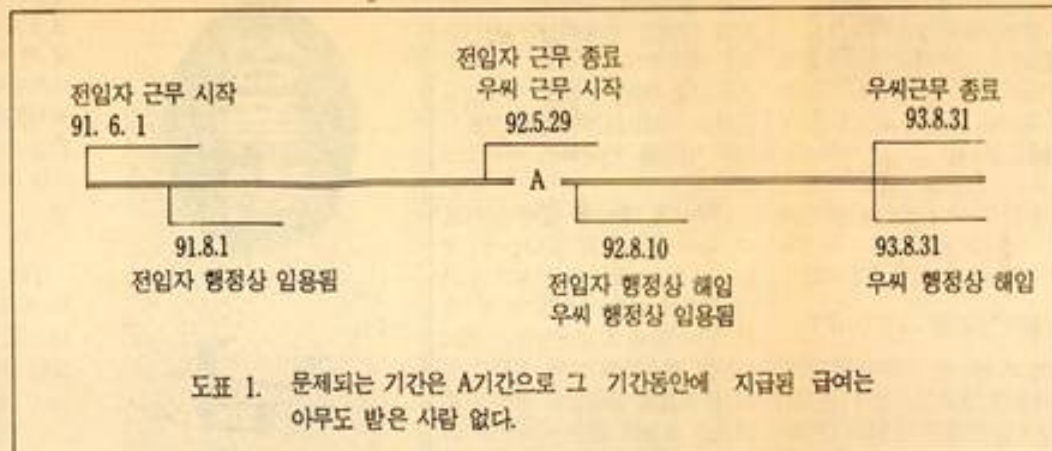
이번
심에 퍼
른 교수
를 바랐

밝혀지
않은 사
리는 용

저희
않습니
시문가
의 명예



"민족 서울대 교수, 학생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사진은 9월 16일 열린 마당에서 열린 집회 모습)"



우리는 고발한다④ 관례 악용 조교봉급 챙겨

지난 10월 서울 민사 지방 법원 제 1 단독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모 조교의 임기전 수개월간의 급여에 대해 우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심판 심사가 있었다(관련기사-서울대 학원 신문 9월 28일자 1면). 학내의 많은 유급조교들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보다 행정직 임용시작이 2-3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이 관례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 기간에는 근무에 대한 보수가 없게 된다. 대신 행정직 임기 만료전에 실제 임기가 끝나므로 실제 일을 하지 않고도 계속 지급되는 보수를 조교 본인이 수령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게 된다.

그런데 우씨의 경우 실제 근무를 행정직상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하게 됨으로써 실제 임용시작 시기인 1992년 5월 28일부터 행정직상의 임용시작시기인 1992년 8월 9일까지의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기간에 대한 보수를 국가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학교행정 담당자는 NMR기기 담당 조교의 경우 행정직 임용전의 기간은 기술교육기간이므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이 화학과에서 관례화 되어 있다는 내용의 화학과장의 확인서와 담당교수가 그러한 사실을 우씨에게 주지시켰고 우씨의 양해하에 기술교육을 했다는 내용의 기기담당교수의 확인서 그리고 기술교육기간에 급여를 받

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임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학교측의 이러한 주장을 살펴보면 몇가지 의문점이 존재한다. 학교측의 진술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조교들이 교육기간에는 전임자들과 함께 근무하고 전임자는 자신의 행정직 임기 만료까지 계속 일을 해야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화학과 유급조교들의 경우 자신들이 처음에 무보수 근무를 한데 대한 보수를 이후에 실제근무를 마친 후에 계속 지급되는 자신 명의의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임자중 조성에씨는 교육기간중 실제 일처리를 해서 그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있다.

우씨의 경우 전임자가 출근하지 않는 상태로 소위 교육기간이라는 시기를 일했다. 그렇다면 첫째, 학교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무보수 기간동안에도 계속 발급된 우씨의 전임자의 급여는 어디로 갔는가? (화학과 사무실에서는 "신교수가 가져갔다"고 증언)

둘째, 학교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전임조교중의 하나인 조성에씨가 소위 교육근무기간동안 실질적 근무를 해서 급여의 일부를 받았다고 하는 확인서가 있는데 전임자 없이 홀로 근무한 우씨에게는 유독 무보수기간이 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고발한다⑤ 신교수의 9.15 답변서와 대책위의 반박내용

근거없는 답변...근거있는 반박

1. 우씨나 그 전임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성취행이나 성취행한 적이 없습니다.

→신교수의 답변은 시간이 갈수록 변하고 있다. 다음은 신교수 자신의 얘기로 월간조선 11월호 「진실은...」에 기사화된 내용으로부터 인용된 것이다. "전임조교에게 목공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함께 간 일이 있었다." "산에 가는데 같이 갈래?"라고 물어본 일이 있다.

"남한산성에 가서 식사를 한일은 있다. 저녁을 먹기에는 일러서 근처를 산책했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데다가 전임조교가 단화를 신고 있어서 내가 한두번 손을 잡아 부축해준 기억은 있다." (이때까지 신교수는 남한산성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더구나 그 시간은 조교의 업무시간인 오후 3시경이다.)

2. 본인의 지도학생인 채준근씨가 우씨의 전임자를 방문했던것은 본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며 독자적인 행동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채씨가 또 다시 우씨의 전임자를 찾아가도록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축소소문 제도로 해석하는 것에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신교수의 해명은 전임자로부터 받은 전술서만으로 그 거짓을 분명 알 수 있다. 전임자는 "본인이 귀하께나 부업안에 목지가 남겨져 있었다. 내용인즉은 교수님이 내전번호를 알고 싶어했고, 내가 연락하기를 바란다는 채준근 명의의 글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다(전임자의 확인서 사본 확보).

3. 본인이 다년간 지도했던 채씨는 1993년 2월에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갑자기 쫓겨났다는 박사의 주장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를 할 수도 있었으나 이것은 지도교수와 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상 연구활동을 막는 반학술적태도라는 어휘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가 없었다면 우조교의 문제가 나기 전인 6월말까지는 어떻게 채박사가 실험실에 나갈수 있었던 말인가? 채박사는 7월1일까지도 당시 실험실에 계속 나와서 실험을 하는 중이었다(실험일지 사본 확보).

4. 우씨를 비롯하여 왜곡된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려는 것은 본인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밝힌 본인의 해명이 목살당한 상황에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 교수의 이 답변은 9월 15일자로 공개된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교수는 이미 8월말부터 당시 개제된 대자보를 사전을 적어 놓는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었다.(이 사진 11장은 신교수가 명예훼손 사건담당검사에게 제출하였다.)

5.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 제4303호)의 제5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조교의 임기는 1년이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화학과 유급조교들이 1년간 근무하고 자동퇴임했습니다. 특별히 유능하거나 학과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유급조교들에 한해서 재임용 절차를 밟아 1년 더 근무시킨 예는 있습니다. 따라서 우조교의 경우 재임용되어야 하는 사람이 특별히 탈락된 것이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유급조교의 경우와 같이 자동퇴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교수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위 월간조선 기사참조). "NMR 기기의 사용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겨 연구실험이 잘라져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지도교수로서 학생을 내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임용기간이 1년인 조교를 내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즉 1년만에 우조교가 자동퇴임을 한 것이 아니라 신정후 교수가 어떤 이유를 - "어떤 이유든지" - 가지고 출근중지를 통보하게 된 것이다.

6. 우조교의 후임자의 선정 및 결정은 교수회의에 따른 학과장의 결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NMR 담당 유급조교를 석사이상, 그리고 반드시 남자로 한한 내규 개정은 없었습니다. 여기에도 진실이 왜곡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책위와 만난 자리에서 학과장은 "과거에는 신교수가 추천하여 타학과 여학생들을 임용하였으나 우조교 문제가 생기자 후임자(역시 여학생이었음)가 물명에 오른 과정에서 신교수 추천을 없애고 원래상태로 돌리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우조교 이후에는 벌써 후임자가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7. NMR 기기는 국가재산이며 본인의 사유물처럼 간주된 것은 결코 아니며, 본인의 사유물보다 더욱 소중하게 관리했을 뿐입니다. NMR 담당 유급조교의 추천 및 선발 과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화학과 교수회의에서 수렴했을 뿐인 사안을 명확한 교수의 월권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며 화학과는 교수 일개인의 월권행위를 묵인하는 학과가 아닙니다.

→학과장은 역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교수 추천에 의해 조교를 임용하였으나 문제가 확대되면서 신교수 추천없이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러나 그동안 신교수가 조교추천에 얼마만한 제약을 가지고 있었을까? 신교수가 독일에서 있는 동안에는 다른 화학과 교수가 NMR 담당교수였던 적이 있었다. 그때 조교가 교체되었는데 신정후 교수는 독일에서 후임자로 추천할 사람의 이력서를 FAX를 통해 받아 보는 정도였던 것이다(대책위는 Fax사본을 확보, 이를 확인).

8.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데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심히 왜곡된 이 상황에서 교수직의 자진사퇴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1979년 화학과에 교수로 임명받아 일약한 환경하에서 14년

일...밝혀진 진실

석박사 대학원생 82 서명한 성명서(9.15)

들은 신정후 교수님께서 이전의 여조교, 여직원,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추행해 왔다고 확인합니다." 적 책임 운운하시면서 우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적을 바꾸시면서까지, 내쫓고 전임조교에게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여 과학도들의 가슴에 상처는 겁니다."

"공적인 일에 연관되어서는 잘못이 있으면 서로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 서로 충고하고 야단치는 것이 떳떳하고 발전적인 일입니다. 처음 이 문제가 터뜨려져 느꼈던 당혹감보다도, 모 교수님께서 T. A. meeting시간에 들어오셔서 사실규명과 동료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동료의 편에 서겠다고 하셨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또 다른 교수님께서 그 방 대학원생들에게(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슬픔이 더 컸습니다."

화학과 학부생들의 의견(9.23)

"어렵습니다...제가 스승에게 그만 물려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이 자리는..."

"그동안 이 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화학과 학생회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교수님이 저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고, 화학과 교수님들이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문제가 해결이 아닌 폭발로 가지 않도록 신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도 모른다고 욕먹으면서, 왜 그리 잔인하냐는 말을 들으면서... 많은 피해자를 생각하며... 이 못난 제자가 간절히 요구합니다. '선생님, 물려나 주십시오!'"

11월 이후 3개 재판 진행

9월16일 신교수가 우씨를 전격 고소함으로써 시작된 법정공방이 10월말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우조교와 신정후 교수 사이에 계류중에 있는 재판은 모두 3개나 된다.

그 하나는 지난 11월11일 2차 심의를 마친 손해심판소송이며 다른 하나는 18일 우조교가 서울지법 433호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던, 신교수가 제기하였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소송이다(관련기사 1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일, 서울 민사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다. 이 소송은 우씨가 신교수와 서울대 총장에 대해 성취행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이는 직장내 성취행 없는데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게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 4면 박원순 변호사의 글).

8월

9월

10월

11월

8월

9월

10월

11월

10. 우조교, 탄원서와 진정서에 대한 대답이 없자 총장실에 전화.
 ▷비서실, "그런 탄원서 모른다. 교무과로 문의하라."
 ▷교무과, "담당자가 없다. 총장님이 읽고 처리를 지시했다."
 우조교, 다시 비서실로 전화.
 ▷비서실, "진정서 받은 일 없다."
 ▷우조교, 학교 우체국에 확인.
 우체국, "본부 총무과에서 수령해 갔다."

우조교, 다시 비서실로 전화.
 ▷비서실,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 다시 보낼 필요 없다."
 8.24. 우조교, 학내에 대자보 게재: "민족 서울대학교의 교수, 교직원, 학생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1시간여 지나자 신교수 담당 실험실 학생들 명의의 반박대자보 게재: "우 X X 씨! 서울대인을 더 이상 조롱하지 마시오."
 8.30. 총학생회, 대학원 자치회 협의회, 여성문제연구 동

아리협의회가 공동으로 진상조사단 구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
 9. 3. 진상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공개토론회 개최.
 9.7~9. 3일간 학부생과 대학원생 4,000여명이 신교수와 학교측의 책임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작업에 참가.
 9.13. 진상조사단, 신교수측에 공개해명요구서를, 학교측에 사건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15일 1시 대화할 것을 제의.

9.16. 학생 300여명, 일리만당에서 집회 후 22동 향의 방문 이후 23일까지 8일간 매일 12시 30분 대학본부 향의 방문. 이날 신교수, 우조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9.23. 학생 1,000여명, 아크로에서 신교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개최.
 9.28. 대학원신문, "우조교 임기전 수개월간 급여 행방묘연" 기사 게재.
 10.11~15. 동아리연합회 학생들, 5일간 매일 12시 22동

향의방문.
 10.12. 서울대 대학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대책위 구성.



기자회견
 서울대 조교 실험실 사건 관련자
 1993. 10. 19

10.19. 장충동 여성평화회의 집에서 공동대책위 공동기자 회견.

소중하게 관리했을 뿐입니다. NMR 담당 유급조교의 추천 및 선발 과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화학과의 교수회의에서 수렴했을 뿐인 사안을 명확한 교수의 월권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며 화학과는 교수 일개인의 월권행위를 목인하는 학과가 아닙니다.
 →학과장은 역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교수 추천에 의해 조교를 임용하였으나 문제가 확대되면서 신교수 추천없이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러나 그동안 신교수가 조교추천에 얼마만큼 제약을 가지고 있었을까? 신교수가 독일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화학과 교수가 NMR 담당교수였던 적이 있었다. 그때 조교가 교체되었는데 신정후 교수는 독일에서 후임자로 추천할 사람의 이력서를 FAX를 통해 받아 보는 정도였던 것이다(대책위는 Fax사본을 확보, 이를 확인).

8.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심히 왜곡된 이 상황에서 교수직의 자진사퇴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1979년 화학과의 교수로 임명받아 열악한 환경하에서 14년 이상 연구와 교육에 몰두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내에서 유포되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들로 본인의 명예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려는 기도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며, 진실이 왜곡되지 않고 만인이 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진실을 밝힐것입니다.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쪽은 신교수일 것이다. 일방적인 우조교의 주장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진상조사는 허위로 했던 것이 아니다. 3만 학우의 양심으로 3만학우를 대표한 대책위가 신교수의 명예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교수는 누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지에 대한 법의 판결 이전에 양심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25일부터 총학생회와 대학원자치회협의회의는 여러차례 본부측에 진상규명을위한 공동조사작업을 제안하였지만,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득이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의 대표만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일주일동안 모든 관련사실들을 낱알이 취재하고 관련증거들-여기에서는 80년대 중반 기숙사 사감이었다던 신교수와 추문이 있었던 여성(현재 지방거주)과의 확인 전화인터뷰까지 포함되어 있다-을 광범위하게 확보하였다. 지난 1백일동안 대책위는 최대한의 진지함과 자제심을 발휘하면서 신교수측과 대학본부의 성의있는 자세를 기다렸으나, 신교수의 고소행위에서 명백히 드러났듯이 저들은 진상규명과 원상회복보다는 흑색선전과 사실왜곡을 일삼을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 1백일, 2백일이 더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것을 모든 학우, 원우들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이 사건에 대한 학생회관의 의견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길은 교수님이 양심에 따라 사실을 밝히는 것 뿐입니다. 다른 교수님들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바랍니다.

S.C.S.C.

밝혀지지 못한 사실이란 해서 일어나지 않은 사실이란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양심을 믿습니다.

영화연구회 알라성

저희들도 더이상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습니다. 학자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 시론가 진실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서울대의 명예를 위해 조용히 물러나 주세요.

총기독 학생화(S. C. A.)

이번 사건은 대학내 여성문제도 뿐만이 아니라 대학대개혁의 관점에서도 꼭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부측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진집단 선언

진리는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라면 교수님에게도 진리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진리를 원합니다. 침묵은 무언의 긍정입니다. 교수님, 대학은 단지 학문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비굴하게만 나오실 것입니까? 저희들도 그런 모습을 더이상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S.F.C.

이번 사건은 단지 개개인 간의 문제이거나 우연적인 사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학이 사회체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유일한 곳이라는 생각조차 깨버린 것으로 볼 수 있고 사회전반의 분위기의 반영입니다. 우리 정씨는 대학의 위상회복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빛 철학연구회

이번 사건은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닌, 전 서울대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신교수와 학교 당국은 더이상 이 사건을 왜곡하려 들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서울대 혼성합창단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관계된 문제이므로 좀더 신중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C.B.A.

이 곳은 '대학'입니다(따른 설명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위의 말을 조금이라도 이해 한다면 신교수는 자신이 대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메아리

이번 사건은 왜곡된 사회 구조에서 우려나오는 성의식과 비뚤어진 대학의 구조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근본적인 치유책을 바랍니다. 또한 신교수님의 2만 학우에 대한 사과와 교수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유네스코 학생회(KUSA)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성격이 결합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대학 사회의 보수적, 종속적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우리의 문제의식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싸우시는 우회정 누나께 박수를 보내며 그걸에 동참할 것입니다.

마당패 탈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신교수 퇴진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내야 하고, 성폭력 특별법 제정등의 학칙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연구회

교수로서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권위를 이용한 행위의 한도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교수님은 바깥에 퇴진할 만합니다.

영상

신교수님과 대학당국이 철저히 대응을 않고 있는 것은 아마 그대로 두면 다시 잘못해지리라 믿기 때문인 모양입니다. 우리도 함께 부끄러워지거나, 새로운 대학을 이룩하느라니 감당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만 빠져들고 외면하는 관악인이 되는 부끄러움을 범하지 않도록, 함께 하기를 결의합니다.

원불교 학생회

신교수님 당신은 교수이기 이전에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충문학연구회

신교수: 나는 다만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이다.
 한울타리: 내가 신교수라면 더 폭발하기 전에 퇴진 하겠다.

여성문제 동아리 한울타리

잘못은 누구나 저지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도덕성이 중요한 교수와 신분일지라도 물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인 것입니다. 신정후교수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서예회

구름이 해를 가릴지라도 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름은 곧 걷히게 마련이며 찬란한 햇빛은 다시 비취게 마련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로 거짓과 허위의 구름을 걷어냅니다.

총불교 학생회

진실은 밝혀지고 밝혀져야합니다. 그 진실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신교수님의 결단을 바랍니다. 우회정씨의 진실에 대한 노력에 박수보냅니다.

카톨릭 학생회

신교수는 22동 309호 대학원생들도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명하십시오.

과학철학연구회

권위주의에 근거한 성폭력은 관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제2의 우회정씨가 나오지 않도록 이번 사건은 분명히 해결해야 합니다.

만화예술연구회 그립터

신교수님의 해명이 단초가 되어 관악을 비롯한 사회전체가 함께 성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민족문화 사랑회 한뎃

이 란은 바로 여러분의
 뜻으로 채워
 주십시오.

관악의 수치는 우리들이 지켜줍니다

하기

매월

학생

연성

수업

시간

문제

이해

해설

문

답

93.10.21 한 거 러

근본적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대의 경우, 그 학교 체육과를 지원하여 면접을 본 Q양은 다음날 자신의 차로 서울까지 태워주었으니 다른 수험생들과 자신이 잡는 숙소에서 자고 가라는

보』 10. 20.) 자신의 추천으로 합격된 4명의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상의 두 경우는 문제가 어쨌든 해결된 경우이다. 그러나 학교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된

만 학생회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교수는 3개월간의 병가를 얻었을 뿐이며 4년간 휴직은 커녕 해당교수에게는 병가가 끝나는 다음 학기의 수업이 배정되어 있었다. 학생회측은 학교측에 항의했으나 학교측은 항의를 묵살한채 여전

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그 성문동의 긴급한 과제로 채택되고 몇 달 전에는 자신에게 짓

◆ 알립니다 ◆

■ 성희롱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이다?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모욕감이나 수치심, 위협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근육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일할 의욕을 상실하기도 하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은 직장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아닙니다! 여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성적 농담은 여성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불쾌한 성적 희롱을 경험하고도 모르는척 지나가 버리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가해자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성희롱이 지속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성희롱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거나 불이익을 경험하신 분은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한국성희롱상담소	02-529-4271	한국여성전화회	02-269-2965
한국여성민우회	02-269-576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521-7348
서울대총학생회	02-880-5223	대학원자치회협의회	02-880-5584

우하고 있었다. 이그럴 사장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면 교외로 나가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였다. 그즈음 회사사장이 좋지 않아 회사운영에 협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할 것이라 짐작하고, 평소 사장이 점잖은 사람이라 믿었기 때문에 자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동행하였다. 그러나 교외의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가자 사장은 양주를 계속 과음하며 몸을 만지는 등 노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큰소리를 지르며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간신히 그 자리를 빠져 나왔지만 회사를 계속 나갈 수가 없었다. 드러내 놓고 싸우자니 더 크게 상처받을 것이 두렵고 작은 회사에서 상호간의 신뢰없이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자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다사의 노동조합, 사장, 회사감 사실앞으로 익명의 진정편지가 배달되었다. 내용은 지방지점의 모과장이 어린 여직원들을 강간

남성이 강간이 아닌 '사소한 농담' 희롱에 대해 감히 성폭력이라 생각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미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강간 및 성폭행과는 별도로 직장내 성희롱에 의한 고용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하려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고 몇년뒤엔 사회로 나간다. 7명중 한사람이 강간을, 4명

중 한사람이 성폭행을 그리고 8명중 한사람이 언어적 희롱을 당하는 우리사회에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아내와 딸이 제2, 제3의 '우조교'가 되지않는다는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그동안 알게 모르게 고통받았던 모든 여성들의 가슴이 후련해질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본다.

교수의 성폭행...세종대·한체대 징계

효성여대, 처벌요구에 학교측 '무시'

교수의 제안을 수락했다. Q양이 교수와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가보니 방은 하나밖에 잡혀있지 않았다. 교수는 다른 수험생들에게 술을 더마시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내고는 그녀를 폭행하려다 실패했다고 한다. Q양은 이후 어머니와 함께 교수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냈으며, 이 사실을 알게된 세종대 학생회는 서명운동, 대자보 게재, 성폭력 특강 등의 활동을 통해 교수의 사표를 받아냈다.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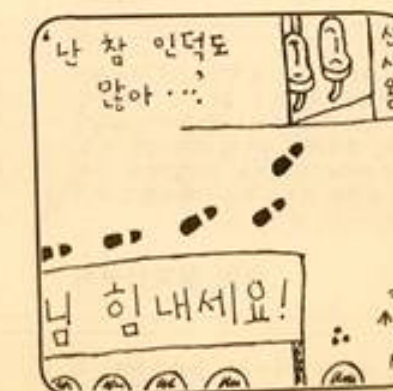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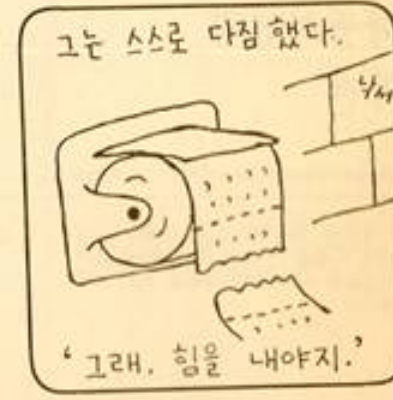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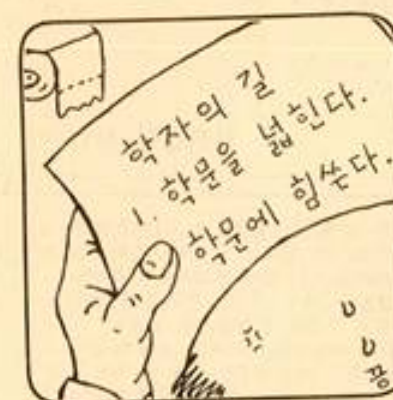
효성여대에서는 미대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거의 상습적으로 해온 사실이 밝혀져 학생회가 대응에 나섰다. 미대 학생회에서는 피해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교수의 사임을 요구하며 해당 교수의 수업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학교측에서는 '해당 교수를 4년간 휴직시키고 그런 일이 재발할 경우 교수

를 사퇴시킬테니 대신 학생들은 더이상 그 일을 거론하지 말라'는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교수의 실질적 징계를 거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주적이라는 학교사회에서도 이와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학원과 직장에서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극복하는 일, 이것은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외치던 한교수는
학원에서 격리된 채 차고 굶은 창살에 갇히는 현실,
반학문적이고 비인륜적인 또 한 교수는
교직을 지키고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현실

늦가을 관악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대, 학문 그리고 대학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봅시다.

서울대 총학생회, 대학원 자치회협의회



세파에도 굴하지 않는 신 한국인

장학
처별대상
8월 서울
대한성
대서울대
최근 교
상청구
라

창작은 자유
- 진봉어 -